의안번호	2126153
의 뢰 인	맹성규 의원
회 답 일	2024. 1. 17.
추계번호	23B5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의 분쟁 해결 제도로 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정관련 회의 개최 등을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0억 5,000만원(연평균 2억 1,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조정제도 도입	210	210	210	210	210	1,050	210

주: 1. 최근 3년간 중재 신청 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에 이른 건수를 향후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보고, 최근 3년간 중재 심리 1회당 예산이 향후 조정 심리 단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조정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 신설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47조의4제1항[1]에 따른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분쟁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함(제3항)	
		제3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4항)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 신설	○	최근 3년간 중재신청 건수 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 또는 보상·수리를 받은 건수를 기준으로 중재 관련 회의 건당 평균 단가를 적용해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 사이의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중재제도 외에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정 신청 건에 대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조정업무 처리 비용 등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최근 3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부[2] 평균 업무를 기준으로 중재신청 건수 중 판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 또는 보상·수리가 이루어진 건수를 개정안에 따른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가정하여 최근 3년간 중재 관련 회의 평균 단가를 적용[3]하여 추계

---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3) 현재 중재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정부도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예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 해결 절차로 조정제도 도입(안 제47조의13 신설)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후 당사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절차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부에 신청된 중재건수는 총 1,684건이었고, 이중 교환, 환불, 보상·수리 등이 720건, 각하 610건, 취하 344건 등이었음

– 향후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기존 중재 신청 건 중 중재절차인 판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교환(146건)·환불(187건)을 받고 취하되거나, 교환·환불 대신 보상·수리(367건)를 받아 종료되는 건들이 조정제도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3년간 700건)

[표 2] 최근 3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부 업무 현황

(단위: 건)

연도	신청 건수	종료 건수	중재 종료 유형							
			교환		환불		보상·수리	요건미충족 등 각하	기각	취하
			판정	합의 취하	판정	합의 취하				
2021	707	828	–	44	4	67	186	295	78	154
2022	444	550	5	49	1	37	120	169	57	112
2023	533	466	7	53	3	83	61	146	35	78
계	1,684	1,844	12	146	8	187	367	610	170	344
			158		195					

자료: 국토교통부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 및 중재 사건별 위원 지급 수당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부의 운영비는 회의참석 수당, 중재 수당 등이 있음

[표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수당 단가

<table>
<tr><th>구 분</th><th>단가</th></tr>
<tr><td>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td><td>○ 회의참석 수당 :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안건검토 수당 : 건당 50,000원
○ 주심수당 : 최초 안건 100,000원, 두 번째 안건부터 건당 50,000원
– 주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안건검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td></tr>
<tr><td>중재부</td><td>○ 회의참석 수당 :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중재 수당
<table>
<tr><th>중재심리 및
사실관계 확인</th><th>현지조사</th><th>중재판정서검토</th><th>중재판정서작성</th></tr>
<tr><td>150,000원</td><td>150,000원×일수</td><td>50,000원</td><td>100,000원</td></tr>
</table></td></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수 중 중재 관련 회의(이하 "중재심리"라 함) 개최 건수는 1,028건이었고 회의 1회당 평균 집행 예산은 902,000원이었음

[표 4] 최근 3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관련 회의 개최 건수 및 집행액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중재신청 건수	707건	444건	533건
심리횟수	429회	333회	266회
심리 진행율 (신청건수 대비)	60.7%	75%	49.9%
심리 관련 예산	403,643천원	296,679천원	232,888천원
심리 1회당 예산	941천원	890천원	876천원

주 1. 신청인 등이 중재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3년간 중재신청 건수의 약 62%에 대하여 중재 심리 실시
2. 심리 1회당 예산은 참석 위원 교통비, 출장비 등에 따라 다소 상이(3년간 회당 평균 902천원)
자료: 국토교통부

○ 최근 3년간 중재 신청 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에 이른 건수를 향후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보고, 최근 3년간 중재 심리 1회당 예산이 향후 조정 심리 단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4],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의 분쟁 해결 제도로 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정관련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2억 1,000만원 등 향후 5년간 10억 5,000만원으로 추정

- 233건(최근 3년 연평균 합의에 의한 중재종료 건수) × 902천원(최근 3년 중재 심리 1회당 평균 소요 비용) = 210,166천원/연

[표 5] 자동차 하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조정제도 도입	210	210	210	210	210	1,050	210

주: 1. 향후 실제 조정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최근 3년간 중재 신청 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에 이른 건수를 향후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보고, 최근 3년간 중재 심리 1회당 예산이 향후 조정 심리 단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조정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4) 현재 중재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정부도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임에 따라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 등은 중재와 조정의 경우 유사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